

의안번호	2201227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 8. 12.
추계번호	24C147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최대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1,700만원, 2029년 7억 7,7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9억 6,500만원(연평균 7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및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연평균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안 제5조)	40	—	—	40	—	80	1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안 제14조제3항)	777	777	777	777	777	3,885	777
합 계	817	777	777	817	777	3,965	793

주: 안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최근 2년(2022년과 2023년)간 연평균 지원규모 수준으로 지출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추후 현행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4조제3항(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5조에 따라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예산 집행액 4,000만원¹⁾을 기준으로 산출
 - 여성가족부는 2020년에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2020년 예산 집행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2025년을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2028년까지 총 2회 실시)되는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여 산출
- 안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최대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표 2]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

	현 행	개정안
지급기간	· 지급기간은 9개월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의 범위에서 연장	· 지급기간은 12개월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의 범위에서 연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예산액이 2022년부터 3억원에서 16억 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을 감안하여 최근 2년간(2022~2023년) 연평균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을 감안하되 이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최대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1.5배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원건수와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지원금 지급

1) 여성가족부는 2020년에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 수립을 위한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가족정책 의제 발굴,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발 연구의 4종 단위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본 추계에서는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가정함

액도 현재의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5가지 요건²⁾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지원규모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2021~2023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연평균*
예산액	300	1,601	1,601	3,202	1,601
지원건수	296	148	296	444	222
지원금액	246	1,560	1,547	3,107	1,554

* 2022년과 2023년 자료만으로 합계와 연평균을 계산함

자료: 여성가족부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⑤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 2025년을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2028년까지 총 2회 실시)되는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약 4,000만원)으로 가정하여 산출
 -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간 확대) 최근 2년간 연평균 한시적 양육비 지급액(15억 5,400만원)의 50%인 7억 7,700만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기간(6개월)이 현행 최대지급기간(12개월)의 50%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

2.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안 제5조)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3년마다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추계의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용역은 2025년에 시작하며 3년 주기로 2028년까지 총 2회 실시

[표 4]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연평균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실시	40	-	-	40	-	80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안 제14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최대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5년간 38억 8,5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2년간(2022~2023년) 한시적 양육비 연평균 지급액인 15억 5,400만원의 50%인 7억 7,7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기간(6개월)이 현행 최대지급기간(12개월)의 50%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함

[표 5]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연평균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777	777	777	777	777	3,885	7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부대의견

- 없음

V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